
입 법 정 보

2019-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5
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6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7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8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8
1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9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9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8.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3
20.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4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6
2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2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	19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20
2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20
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9.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32.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23

3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3
3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5
3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6
36.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3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40.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0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2
4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3
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4
4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정부입법 예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12. • 마감일자 : 2019. 9. 23.
-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12. • 마감일자 : 2019. 9. 23.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8. 12. • 마감일자 : 2019. 9. 2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어느 시점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장애등급 판정 당시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 1)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 1)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다. 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 1)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8. 13.

• 마감일자 : 2019. 9. 23.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 신청(안 제12조의5의제2항)

- 1)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2조의5제4항)

- 1)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함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8. 13.

• 마감일자 : 2019. 9. 23.

○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희 시설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실태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고하는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50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1) 실태조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

나. 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점유 토지에 대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3)

1) 실태조사 후 매 홀수연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다. 토지에 대한 권원 확인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10.

○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인상분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 보전 등에 배분하고,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충당부분을 주민이 과세 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신

고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10.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10.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 청구 허용,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방세 조합’을 신설하고,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5.
- 현행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물질’ 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설비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출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도면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3.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 2019. 1.15. 공포, 2020. 1. 16. 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2부터 제

2조의4까지 신설)

- 1)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법인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체화하고,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등(안 제3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 신설)

-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 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 시·도지사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함.
- 3)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

다. 시정조치의 절차 등(안 제9조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사유 및 내용, 시정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함.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3.
-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보호 및 주택의 품질확보를 하려는 것임.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3.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14. • 마감일자 : 2019. 9. 23.
-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을 억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대상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 1)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였음.
- 2)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공통기준을 조정함.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

- 1)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 1)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함.

18.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8. 16.
- 마감일자 : 2019. 9. 25.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 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 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mu\text{g}/\text{m}^3$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mu\text{g}/\text{m}^3$ 이하)을 충족할 것.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8. 16.
- 마감일자 : 2019. 9. 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 1) (현황) 창업의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 내용 근거 불충분
-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 3) (기대효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 운영내용의 명확화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39조의6)

- 1)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2)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 3)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 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및 보안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2)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 3)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 1)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고, 외국어를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음
- 2)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의 크기 제한 및 외국어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칭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1)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기부자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취임 예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추진방향에 맞추어, 재산 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는 다른 서류(재산 기부자의 경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경우 이력서·취임승낙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료 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 설립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8. 19.

• 마감일자 : 2019. 9. 30.

○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관리와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추가 지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등재된 질병 중 일부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 방역관리 및 해외 전염병 유입의 차단에 애로가 있어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

취장염”,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하려고 함

나. 살처분 대상 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19조)

1)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중 “급성간취장괴사병” 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려고 함

다. 수입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8조제1항9호 및 별표 3의2)

1)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함

라.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1) 수산물 수출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수출지원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 소각 시 열처리 장치 사용(안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1)

1)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을 소각할 경우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소각이 가능하여 열처리 장치의 사용이 곤란함에 따라 열처리 장치를 갖춘 장소에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및 제24호의12 서식)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및 “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을 개정함

2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8. 19.

• 마감일자 : 2019. 9. 30.

○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요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방안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9. 8. 19.

• 마감일자 : 2019. 9. 30.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기상 탐지 및 기상 예·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우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며, 해양기상정보 취약계층인 먼 해양 장기조업 선박이 개선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및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기상자료 및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의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호우·대설·태풍 등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예·특보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우주기상특보의 통보 개정(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1) 우주기상특보는 기상특보와 달리 우주기상의 영향을 받는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고자 함.

다. 선박에 대한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1) 해양기상정보의 취약계층에게 해양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정보 수신을 위해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 등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 1) 기상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안 제36조 개정)

- 1) 기상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또는 기상정보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삭제하고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함.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30.
-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30.
-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배출원의 종류,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항만배출원의 종류(안 제2조)

1)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항만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등으로 규정

나.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절차(안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다.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안 제4조)

1)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을 규정

라. 저속운항해역의 지정절차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를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마. 비산먼지 발생 화물(안 제6조)

1)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등으로 규정

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종류 등(안 제7조)

1)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

사. 항만출입제한 자동차의 예외(안 제8조)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에 노후자동차의 차량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대통령령 제29830호, '19.6.11. 개정, '19.7.1. 시행) 개정예 따라 “병원·한방병원 일반

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개선(안 별지 제6호 서식)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30.

- 현재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중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9.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19.

-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0

● 마감일자 : 2019. 9. 30.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취소 등 근거 마련 명확화(안 제6조의2)

- 1) 현행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업무를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부정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 2) 이에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와 수료증 발급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조건부허가의 변경 허가 등 여부 명확화(안 제12조)

- 1) 현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 허가·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허가 등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변경 허가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도·양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는 등 입법미비점이 발생함.
- 2) 이에 법 제12조의 변경허가 등의 대상에 조건부허가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함.

다. 교육 미이수 품질책임자의 업무 배제 명확화(안 제13조)

- 1) 현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등은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책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은 상태임.
- 2)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위임한 신산업 및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과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 신산업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규정, 산업용지 등 처분특례 부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1.
- 마감일자 : 2019. 9. 30.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 1)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3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1.

• 마감일자 : 2019. 9. 30.

○ 폐차업자가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에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수검,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장 보관 일수를 확인하여 부과 일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지 제18호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에 자동차 입고일 란 추가

- 1) 현재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실제 해당 자동차가 폐차에 이른 경우 관할관청이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폐차장에 보관한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하더라도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되고 있음.
- 2) 기존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
- 3) 과태료 부과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확인하여 미수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 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차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2.
- 마감일자 : 2019. 9. 4.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 1)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 육성 교육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

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1)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

4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8. 22.

• 마감일자 : 2019. 10. 1.

○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노면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의미를 명확화, 통합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단순 물적피해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내에 ‘담당 경찰관 의견’란을 신설하여 교통조사관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판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대각선 횡단보도,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 유도선 표시를 신설하고 제한되어 있던 보조표지 글자 수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6)

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안건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반영한 화살표가 포함된 주의표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되어 '21.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를 신설함(안 별표 6)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가 존재함에도 시행규칙상 노면표시는 버스전용차로 표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용차로 표시 의미로 확대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

4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8. 23.

● 마감일자 : 2019. 10. 2.

○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방식인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상치장소 변경신고 및 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규제 완화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동체라디오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